

요 구 자 료

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 의거 건축물 등의 양수,임차, 전세권 설정 등을 위해 미래부장관 승인이 요청된 케이스 전체 및 승인이 있었다면 사후 부가발생된 조치에 관한 정보

[관련 법령]

- 1. 특구법 제38조 1항 : 입주기관이 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부지·시설 또는 건축물(이하 "건축물등"이라 한다)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특구법 제38조 2항 : 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 등을 양수·임차·사용대차 또는 전차(轉借)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특구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답 변]

- 1. 특구법 제38조 1항에 따른 연도별 양도승인신청 건수

업 무 명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.6	계
양도승인신청	7	5	6	7	5	5	7	1	43

□ 2. 특구법 제38조 2항에 따른 연도별 입주승인신청 건수

업 무 명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.6	계
입주승인신청	26	34	64	31	34	31	57	60	337

* 관련근거: 특구법 37조 1항(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. 입주승인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)

□ 3. 승인 이후 사후 부가 발생된 조치에 관한 정보

- 해당사항 없음.

* 특구재단이 입주기관에 승인통보 후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근거 없음.

□ 4. 미래부장관 승인이 요청된 케이스*[※] 대한 정보

※ 본 사항은 '미래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한 각각의 민원 세부내용으로 이해됩니다.

- 공개대상이 아님.

* 관련근거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인 '기술개발, 용역, 임대, 분양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(협약서, 계약서 등)'에 해당